

---

자금세탁방지 관련  
2025년도 교육운영방향

---

2025. 3.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정 보 분 석 원

## 목 차

I. 자금세탁방지 교육 개요 .....	1
II. 2024년도 교육실적 .....	2
III. 보완할 점 .....	3
IV.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 .....	4
1. 자금세탁방지 교육 의무의 성실한 이행 유도 .....	4
2. AML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기회·콘텐츠 제공 ..	5
3. 평가 인정 AML 자격증·교육과정 확대 및 내실화 .....	7
V. 향후 협업 계획 .....	8

## 〈 자금세탁방지 주요 용어 〉

<p><b>AML</b> ( 자금세탁방지 ) : <b>Anti-Money Laundering</b></p>	<p>불법재산의 취득·처분을 은닉·가장하는 행위를 방지</p>
<p><b>CFT</b> ( 테러자금조달금지 ) : <b>Countering(Combating) the Financing of Terrorism</b></p>	<p>테러자금조달 범죄화 및 관련단체와의 거래금지</p>
<p><b>STR</b>(의심거래보고) : <b>Suspicious Transaction Report</b></p>	<p>특정 자금이 범죄 활동의 수익이거나 테러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</p>
<p><b>CTR</b>(고액현금거래보고) : <b>Currency Transaction Report</b></p>	<p>일정금액(1천만원)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</p>
<p><b>CDD</b> ( 고객확인 의무 ) : <b>Customer Due Diligence</b></p>	<p>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·검증하고, 실제 소유자, 거래의 목적,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</p>
<p><b>EDD</b>(강화된 고객확인 의무) : <b>Enhanced Due Diligence</b></p>	<p>고객별·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,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</p>

# 1. 추진 배경

-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접점 부서·담당자의 고객 확인·리스크 평가부터 의심거래 탐지, 내외부 보고체계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함
  - 이를 위해서는 AML 담당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“전사적 차원”에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이해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
- 특히 도박·마약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신종 거래수단 등장으로 자금세탁방법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
  - 범죄 피해자의 확산 및 불법자금의 이전을 조기에 탐지·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교육을 통해 최신 AML/CFT 기법 및 자금세탁 유형 등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야 함
- 이에 따라 FATF는 금융회사등에게 “지속적 임직원 교육”을 내부통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(R.18)
  -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(이하 ‘특금법’) 또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의무를 직접 규정(§5)하고 있으며,
    - 업무규정에서 보고책임자로 하여금 직위, 담당업무 등 교육 대상별로 적정한 교육·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고 있음(§7)
- 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금융회사등의 내실 있는 교육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교육운영방향을 수립·발표하고 있으며,
  -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제도를 통해 권고 교육시간 이수 여부 등을 확인(이해도 점검, 대면교육 여부 등에 따라 실적인정 차등화)

### < 금융정보분석원(FIU) 및 관계기관 교육업무 체계 >

구분	관련 역할
금융정보분석원	교육운영방향 수립 교육 관련 평가지침 마련
의무이행기관 (금융회사 등)	내부(자체)·외부교육 실시
민간교육 전문기관 (금융·보험 등 업권별 연수원)	집합/사이버교육 제공
자격증 운영 기관 (금융연수원, 자금세탁방지 협회 등)	

## II. 2024년도 교육실적

- **(교육이수시간)** '24년 금융권 AML 교육실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(임직원 평균 '23년 8.3시간 → '24년 8.8시간)
  - 특히, 직원 평균 교육시간(9.2시간)이 권고시간(6시간)을 크게 상회
  - 권고시간(이사회·경영진 최소 6시간, 직원 평균 6시간) 이상 교육 이수 임직원 비율도 91%로, '23년(86.5%) 대비 개선

< 연간 이사회·경영진·직원 교육 실적(시간/이수비율) >

(단위: 시간, %)

구분	이사회	경영진	직원	소임직원
'23년	4.5 / 56.8	7.5 / 88.0	8.8 / 90.0	8.3 / 86.5
'24년	4.3 / 58.1	7.5 / 87.2	9.2 / 94.1	8.8 / 91.0

※ 은행·보험·증권 등 '23년 3,700여개사, '24년 3,300여개사 기준

- **(전문자격)**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강화방안 발표('23.7월), 신규 자격증 도입\* 등의 영향으로 AML 전문자격증 취득자가 '23년에 이어 '24년에도 큰 폭 증가('21년 6,048명 → '24년 10,059명)

\* '24년 TPAC 시험(Test of Proficiency in AML/CFT) 최초 도입 3,130명 응시 총 1,631명 자격 취득

< AML 전문자격별 취득자 추이 >

(단위: 명)

구분	TPAC	AML 핵심요원(기초)	AML 핵심요원(전문)	컴플라이언스 오피서	합계
'23년	-	7,021	869	908	8,821
'24년	1,631(신규)	6,878(△2.0%)	784(△9.8%)	766(△15.6%)	10,059

- **(교육형태)** 금융회사 자체교육 비중 확대 유도 등으로 민간전문 교육기관\* 이수자는 '23년(총 6.6만명) 대비 약 18% 감소(5.4만명)

\* 금융연수원, 보험연수원, 여신금융교육연수원, 금융투자교육원 등

- 비대면교육 선호 강화로 집합교육 우대\*에도 불구하고, 사이버 강의 수강 비중이 다소 확대('23년 95% → '24년 95.4%)

\* AML 제도이행평가에서 집합교육 시 사이버교육 대비 20% 가산

< 민간전문교육기관 분야별 교육 실적 >

구분	'23년	'24년
집합교육	3,288명	2,478명
사이버교육	6.3만명	5.1만명
합계	6.6만명	5.4만명

### III. 보완할 점

#### ① 이사회·경영진에 대한 AML 교육 미흡

- 전반적인 임직원 교육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    - 경영진의 교육 권고시간(1인당 6시간) 미달성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(11.97% → 12.82%)하는 등 AML 관심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\*
    - \* 경영진 평균 교육시간은 '24년 연간 7.5시간이나, 경영진은 일반 직원과 달리 최소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, 권고시간 달성 여부가 중요
    - 특히, 이사회 교육실적은 지속적으로 권고시간(1인당 6시간)에 못미치고(평균 4.3시간)하고 있으며, 미달성률도 42%에 육박
- ⇒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('25.5월 시행)으로 경영진·이사의 AML 관련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진 만큼, 교육의무 이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

#### <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상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 >

- ① 이사회 : 내부통제 체계 구축·운영 감독 및 취약점 개선조치에 대한 승인, 개선지시
- ② 대표이사 :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, 보고책임자 임명,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 총괄 등
- ③ 준법감시인 : 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보고책임자의 업무 감독
- ④ 보고책임자 : 내부통제 체계의 정기적 점검, 취약점의 대표이사 보고 등

#### ② 실질적 AML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기회 부족

- 특금법 적용기관중 일부 대형기관을 제외한 상당수가 실질적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기회 부족을 호소
    -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한 고위험 고객·거래 유형, 검사·제재 사례 등과 관련된 학습자료 및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
  - 수도권에 전문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지방소재 지점, 조합 직원들의 사이버 강의 등 일방향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(질의응답 등이 가능한 쌍방향 교육기회 부족)
- ⇒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수준 향상을 지원하고, 현장 워크숍 등을 통해 최신 AML 이슈 등을 빠르게 공유

## IV.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

### I 자금세탁방지 교육 의무의 성실한 이행 유도

#### ① 취약 업권 등의 AML 교육의무이행 지속 강화

- 상호금융, 핀테크, 카지노 등 전반적 교육실적 및 권고시간 이수율이 저조한 업권\*을 중심으로 교육의무 이행을 독려

\* 평균 교육시간, 권고시간 이수 임직원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음

- 필요시 실적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이행계획·성과 확인 및 현장점검\* 추진 검토

\* FIU는 AML 제도이행평가 실적 미흡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중

- 이사회 및 경영진의 AML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소 교육시간 (1인당 6시간) 기준을 '25년에도 유지

< '25년 AML 교육권고시간 ('24년과 동일) >

구분	산정기준	평가방식	배점
이사회	최소 6시간	절대평가	10
경영진	최소 6시간	절대평가	10
직원	평균 6시간	절대평가	48

#### ② AML 교육 실태조사 및 정밀 분석 추진

- '25년중 업권별 세부 교육운영 실태(자체교육/민간교육업체 이용 여부, 사이버/대면교육 비율, 교육 미이수자 현황 등)를 전반적으로 조사\*  
→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 (1차: '25.1~6월, 2차: '25.7~12월)

\*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권고 교육시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는 있으나, 평가 결과가 통상 매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연초에 교육방향 수립에 참고하는데 한계

- 1차 조사결과를 '25년 하반기 유관기관 협의회(10월 잠정)에서 점검  
- 업권별 건의과제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'26년 교육운영방향 및 제도이행평가 평가지표에 반영

## 2

## AML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기회·콘텐츠 제공

### ① 검사수탁기관·금융기관등 합동 워크숍 개최

○ FIU와 검사수탁기관, 업계 AML 담당자가 함께하는 「현장 워크숍」을 개최, 실질적 AML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('25年中 총 7회 개최 계획)

- 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 의심거래 유형 공유
- ②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확인된 업권별 취약점·개선과제 안내
- ③ '25년 FIU 감독·검사 운영방향 및 실제 제재사례 등 설명

#### < 현장워크숍 계획(안)>

구분	3.14(금)	3.28(금)	4.11(금)	4.24(목)	5.23(금)	6.11(수)	7월(미정)
대상 (위탁기관)	농협 (중앙회)	카지노 (제주도청)	새마을금고 (중앙회)	수협 (중앙회)	신협 (중앙회)	벤처투자사 (중기부)	산림 (중앙회)
참석자	FIU 및 검사수탁기관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담당자						

### ② 유관기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한 AML 역량제고 지원

○ FIU·금감원 주관 현장 워크숍, 의심거래 동향공유 협의체\*, 유관기관 협의회\*\* 등 AML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추진

\* 업권별로 최신 자금세탁 유형 및 이상동향 등을 공유하는 협의체(매월 개최)

\*\*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 및 개선을 위한 FIU와 유관기관간 협의회(연2회 개최)

○ 담당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은 협의체 참여를 교육실적으로 인정\*

\* 현재 교육과정명·교육제작기관·교육자료 등의 증빙을 모두 갖춘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

- 무분별한 교육인정을 방지하기 위해 FIU, 금감원 및 검사수탁기관, 업권별 협회에서 실시한 회의체 참석만 반영

\* 논의내용이 포함된 협의회 개요와 참석여부 증빙必

### ③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 지원

- 상호금융·우본 등 검사업무를 FIU에서 수탁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업권\*에 대해 검사원 특화 교육과정 개설 추진\*\*

\* 검사대상기관 : (상호금융 중앙회) 농협 1,111개, 수협 91개, 신협 865개, 산림 141개, 새마을금고 1,276개, (우본) 2,416개 등

\*\* '25년 상반기 중 금융연수원 "검사수탁기관을 위한 AML/CFT 실무" 개설 추진

- 검사 사전준비, 검사기법, 주요 지적사례, 검사문서 작성 등 검사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실무 위주 교육 실시

- 최대한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라이브 강의 송출\* 등 검토

\* 기존에는 오프라인 강의 위주 진행으로 활발한 운영 및 참여에 한계

### ④ 민간전문교육기관 글로벌 콘텐츠 확대

- AML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및 해외진출시 유의사항을 학습할 수 있는 해외 제재사례 관련 교육과정 개설

\* '25년 하반기 중 금융연수원 "국내외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제재 사례 과정" 개설 계획

- 금융회사·가상자산·카지노 등 업권별로 주요 국내·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사례 및 법률준수를 위한 지침 등을 안내

- 외국인 이사회·경영진의 AML 교육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금융연수원 등 민간전문교육기관의 기존 온라인 AML 교육과정에 영문자막 추가 제작 추진

\* 외국은행·증권 지점, 보험회사, 자산운용사 등에 300여 명 재직중

### ⑤ 최신 자금세탁유형 교육을 통한 의심거래보고(STR) 내실화

- 가상계좌, 간편송금 등 신종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최신사례를 포함한 '의심거래 참고유형\*' 개정서 배포('25년중)

\* '01년부터 '22년까지 6회에 걸쳐 개정, 금융기관 등에 배포

- 금융사 등 자체교육 및 민간전문교육기관 강의교재에 수록 사례들을 포함하도록 하여 AML 담당자의 STR 역량 강화 지원

### 3 | 평가 인정 AML 자격증 · 교육과정 확대 및 내실화

#### 1 | 신규 도입 자격증 · 교육과정을 평가에 반영

- AML 제도이행평가에 '24년 신규도입 자격증(TPAC) 및 전문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, 기존/신규 자격증의 평가점수를 재조정
- FIU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평가제도의 취지, 취득기준 (사전 교육시간, 업무경력 등), 난이도,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지표에 반영
  - ※ 신규도입 자격증 ·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이행평가 상세 배점 등이 포함된 제도이행평가 지표정의서는 위험평가(RBA) 시스템을 통해 既배포
-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시 교육정책자문위를 개최, 평가 기준 재검토 가능
- 신설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이행평가 반영 수요를 수시로 조사하여 평가인정 전문교육을 확대

#### 2 | 전문가 자격증의 유효성 판단 강화

- AML 자격증이 특금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및 최신 자금 세탁 유형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기 위해 향후 자격별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
- 유효기간 만료 시 재취득을 하도록 하는 자격증과 보수교육을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자격증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
- \* '25년중 유효기간을 새로 설정한 자격증의 경우, 자격증 보유인원 산정시 '26년 평가('27년 상반기 실시)부터 유효기간 적용(재취득, 보수교육 기간 등 고려)

## V. 향후 계획

- 「'25년 AML 교육운영방향」을 바탕으로 FIU·검사수탁기관·업권별 협회·금융회사 등이 협력하여 교육정책 실시
- (금융회사등) 직원별 교육 권고시간 설정, 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자체 교육계획 수립·이행
  - '24년 교육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 자체점검을 거쳐 AML 교육의무 이행노력 강화 (교육계획 대표이사 보고 등)
- (업권별 협회 등) 회원사·단위조합 등 교육실적 점검 및 독려, 「유관기관협의회」 등을 통해 FIU와 진행상황 수시 공유
- (민간교육전문기관) 자금세탁방지 부문 교육·연수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·공급하고 자격제도 유지·관리
  - 교육 수요자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·확충 노력 지속
- (검사수탁기관) 검사시 취약부문 교육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검사반원 자체교육 등을 통해 검사역량 강화 추진